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50

발의연월일: 2020. 9. 14.

발 의 자 : 허 영 · 전재수 · 강선우

김윤덕 • 박상혁 • 이용빈

한병도 · 서동용 · 설 훈

양이원영・이원욱・이수진(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원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수급사업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신설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56조의2 및"을 "제56조의2, 제5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 ③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
	기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
	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
	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u>러하지 아니하다.</u>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u>⑤</u>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u>제56</u> 조의2, 제 <u>56</u> 조
제57조를 준용한다.	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